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98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이학영·김영진·진선미

김교흥 • 박홍배 • 전재수

김성환 • 안호영 • 이병진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	
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	
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	
년에 2회, 매회 <u>1억원</u> 의 범위에	<u>2</u> 억원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